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기술보증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이하 ‘새출발기금’)을 통한 부실차주 및 부실우려차주의 보증부대출 채무조정의 법적 기반 마련

3. 주요내용

가. 조기 보증채무 이행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26조제1항제4호)

1) 현재 채권자는 파산·해산, 폐업 등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기술보증기금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이에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경우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부실우려 채무에 대해서는 보증채무의 이행이 불가

2) 국가정책적으로 신속한 보증채무 이행의 필요성이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동의를 거쳐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기에 보증채무의 이행이 가능하도록 개정

3) 이에 따라 새출발기금 운영 과정에서 부실이 발생하기 전인 부실우려차주에 대해 기술보증기금의 조기 보증채무 이행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신속한 채무조정이 가능하게 됨

나. 보증채무 이행시 신설 부실채권 관리 기업에 대한 구상채권의 매각 근거 마련(안 제27조의2제4호)

1) 현재 기보가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상대방은 부실채권의 매매·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으로 한정되어 있음

2) 기술보증기금이 안 제27조의2제4호 개정을 통해 보증채무의 이행 후 해당 구상채권을 채무조정 등 국가 정책목적에 맞게 관리·회수하는 부실채권 관리 기업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2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6,000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한 조치임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추진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위한 국가정책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업의 동의를 거쳐 기금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

제27조의2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 및 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라 설립된 기관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6조(보증채무 이행청구의 사유) ①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3. (생략) <u><신설></u> ② (생략)	제26조(보증채무 이행청구의 사유) ① ----- ----- ----- ----- ----- -----.
	1.~3. (현행과 같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위한 국가정책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업의 동의를 거쳐 기금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의2(구상채권의 매각) 법 제37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3. (생략)	제27조의2(구상채권의 매각) ---- ----- ----- -----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4.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
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
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4
호라목에 따라 설립된 기관

〈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연 락 처	(044) 204 - 7703